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의거, 2023년 8월 2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89,485,5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2.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 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3년 8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 거래일(2023년 9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 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3) 2 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 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 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5 조의 2 에 의거하여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3년 9월 25일

6. 신주의 배정방법 :

(1)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17,897,1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 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30117711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에서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을 차감하여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증거금의 100%)

8.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3년 11월 8일(1일간)

(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2023년 11월 8일 ~ 2023년 11월 9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 :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1월 14일 (2일간)

9.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

(3)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한화오션(주)의 주식을 예약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지점 2) 대신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신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

10. 주금납입예정일 : 2023년 11월 16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1월 1일

1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될 예정이며, (ii) 명의개서 대리인(하나은행)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약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7일 (5거래일)

(6)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예약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합니다.

(iii)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진행합니다.

13. 신주 상장예정일 : 2023년 11월 28일(예정)

14.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해당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2023년 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배정 할 것을 공고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9월 25일

2023년 8월 23일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한화오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혁 웅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 승 열